

2024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회: 2024. 9. 2. (월)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디딤돌 걸림돌 선정위원회



사단
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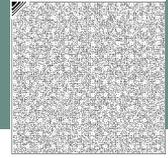
선정사

여기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디딤돌과 걸림돌을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그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디딤돌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반면, 걸림돌은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법부가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있어 얼마나 디딤돌과 걸림돌의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단체는 2015년부터 사법부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이 되는 판결과 걸림돌이 되는 판결을 선정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22개의 법률이 존재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체계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사법부의 판결들은 장애인 권리의 실질적인 실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2024년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사업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사업 협력을 통해 장애 관련 사법 모니터링의 영향력을 더욱 폭넓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판결들 중 몇 가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는 사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도 같은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아쉽게도 일부 판결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마치 무성한 덩굴에 발이 걸려 넘어지듯, 장애인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법은 시대와 함께 진화해야 하며, 그 해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이러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판결의 흐름을 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1차, 2차, 그리고 최종 3차에 이르는 선정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분들,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없었다면 이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매년 이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주시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우리는 매년 한층 더 나아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책자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기록이자, 장애인 인권 보호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책자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내고,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결국, 디딤돌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걸림돌은 우리 모두의 손으로 치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자를 통해 디딤돌이 더 많이 생기고, 걸림돌이 사라지는 미래를 꿈꿉니다.

여러분, 함께 디딤돌을 놓고, 걸림돌을 치워나갑시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2024. 9.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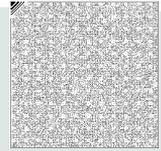
CONTENTS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 소개 _6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과정 _8

디딤돌 판결

- ❶ 채용면접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 _12
- ❷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 시설로 포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성범죄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_14
- ❸ 농아인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체포 및 의사소통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 _16
- ❹ 법적 근거 없이 보행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_18
- ❺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탑승 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임을 인정하고 동반자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판결한 사례 _20
- ❻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통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성년후견을 종료한 사례 _22
- ❼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비대면 거래 금지와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우체국의 내부규정이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 차별행위라고 판결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사례 _24
- ❽ 정신적 장애인의 진술 신빙성과 형사사건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한 주요 사례 _26
- ❾ 지적장애와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직장 내 차별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 _28
- ❿ 정신장애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적 언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_30



- ①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정을 타당하게 해석한 근거를 제시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상대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 _32
- ② 장애를 넓은 범위에서 해석함으로써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_34

걸림돌 판결

- ① 30여 년 간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행위를 '선행'과 '돌봄'으로 포장하여 주체적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_38
- ②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하는 경우 운전석 대각선에만 앉아야 한다는 지침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_40
- ③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사건에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판례에 따른 재량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한 사례 _42
- ④ 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보조 제한 등에 대하여 현행 투표보조인 제도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법적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_44

주목할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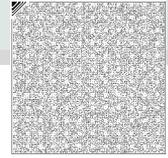
- ①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대출계약의 무효, 대출금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자문서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_48
- ②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표준휠체어에 관해서만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에 대하여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_50

2024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

가나다순

1차 선정위원(41인)

- 강다영 변호사(법무법인(유한)지평)
- 강다윤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 강승욱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 고효정 변호사(법무법인(유한)지평)
- 구교은 변호사(법무법인(유한)지평)
- 구분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김나래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 김민경 변호사(법무법인(유한)지평)
- 김민혜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 김병민 법무관(인천지방검찰청)
- 김영미 변호사(사단법인 온울)
- 김윤진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김진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박민서 변호사(변호사 박민서 법률사무소)
- 박순영 변호사(법무법인(유한)지평)
- 박아름 변호사(법무법인(유한)지평)
- 박지은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울)
- 부종욱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심규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 염주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지평)
- 윤여형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 윤영원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
- 이시향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 이은달 변호사(법무법인(유한)지평)
-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이지원 변호사(법무법인(유한)지평)
- 이형규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 장수형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 정제형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조은별 변호사(법무법인(유한)지평)
-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채수평 변호사(법무법인(유한)지평)
-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 표경민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 한동훈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 한소는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 홍서연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 황재원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2차 선정위원(12인)

-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 구교은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 구분석 법무법인 이공
- 김민혜 법무법인 디엘지
- 김영미 사단법인 온을 변호사
-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 박민서 변호사 박민서 법률사무소 변호사
- 염주민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 이지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 장용혁 법무법인 서초 변호사
- 조은별 법무법인(유한)지평 변호사
- 지성래 변호사 지성래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종 선정위원(8인)

-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김성태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증진팀 팀장
- 배용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R&D센터
건강건축환경연구실 UD연구팀 이사
- 변재원 소수자정책연구자
- 윤여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임한결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

간 사

- 김영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 김아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도움을 주신 분과 단체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단법인 동천
- 대한변호사협회
- 김진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박민서 변호사(변호사 박민서 법률사무소)
-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손고운 한겨레21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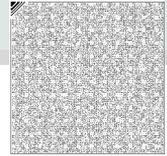
선정 대상 판결 및 선정 과정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사업의 선정 대상 판결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건 중 ‘장애’를 언급한 판결로, 장애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진 판결을 모두 선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영역의 소송 판결문을 포괄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판결문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등 총 26곳의 법원 홈페이지에서 ‘장애’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여 수집하였고, 형사 판결은 판례검색 사이트를 활용해 ‘장애’ 관련 판결문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시스템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판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국법원 주요판결 검색 시스템을 이중으로 활용하고,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제보받은 판결문을 포함해 총 4천여 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애를 언급한 총 4천여 건의 판결문을 1차적으로 수집 및 선별하기 위해 41명의 법조인이 참여하였습니다. ①판결의 영향력, ②장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③장애 인권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각 항목당 1~10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1차로 선별된 142건의 판결문을 2차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차 선정에는 한 개인의 의견만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소 2인 이상이 조가 되어 모든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으며, 이 중 각 항목에서 평균값 이상 획득한 판결문 25건을 3차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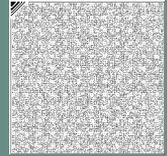
최종 선정에는 1,2차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 4인과 유관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 위원 4인이 참여하였습니다. 8명의 선정위원은 각자 배정받은 25건의 판결문을 철저히 분석하고 발제하였고, 3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를 통해 디딤돌, 걸림돌, 주목할 판결 후보를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인권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디딤돌 판결’ 12건과 장애인 인권증진에 제동을 건 ‘걸림돌 판결’ 4건을 선정하였고, 디딤돌 또는 걸림돌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킨 판결인 ‘주목할 판결’ 2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위원들의 경험과 전문 영역에 따라 의견이 다소 갈리기도 하였으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자료집을 완성하였으며, 이 사법 모니터링의 결과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겨레21과 협력해 장애 인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조명하였습니다.



2024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판결은
총 12개 판결입니다.



디딤돌 판결

- ① 채용면접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
- ②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 시설로 포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성범죄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 ③ 농아인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체포 및 의사소통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
- ④ 법적 근거 없이 보행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⑤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탑승 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임을 인정하고 동반자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판결한 사례
- ⑥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통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성년후견을 종료한 사례
- ⑦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비대면 거래 금지와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우체국의 내부규정이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 차별행위라고 판결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사례
- ⑧ 정신적 장애인의 진술 신빙성과 형사사건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한 주요 사례
- ⑨ 지적장애와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직장 내 차별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
- ⑩ 정신장애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언행이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적 언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⑪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정을 타당하게 해석한 근거를 제시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상대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
- ⑫ 장애를 넓은 범위에서 해석함으로써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디딤돌 판결 1

채용면접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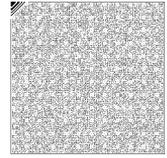
사실 관계

원고는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B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여 위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이후 두 차례의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최초 면접시험에서 2명의 면접위원들로부터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다. 원고는 해당 면접에서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면접위원들로부터 B시의 문제점, 추진하고 싶은 정책, 불합리한 지시에 대한 대응방법 등 장애와는 무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하였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적법한 추가 면접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가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이 원고가 최초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였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법한 추가 면접시험으로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

키워드: #정신장애인 #장애인 고용 차별



선정의견

• 조인영

법원은 고용에 대해 “장애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인격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명시하면서, 고용상 장애인차별의 위법성을 강조하였다. 해당 판결은 형식적인 추가 면접시험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하자가 치유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 차별을 인정한 판결로서 디딤돌 판결에 선정한다.

최근 채용과정 중 면접에서의 장애인 차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채용기관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차별 예방 및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사기업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무원 일반 행정직 모집 전형은 장애인의 정규직 취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전형에서의 고용 차별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부재하다. 해당 판결의 의미를 넘어서,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인 조치들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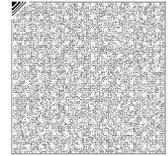
디딤돌 판결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 시설로 포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성범죄가 성폭력 처벌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실 관계

피고인은 2020. 11. 경부터 2021. 6. 경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소속 종사자로서 대·소변처리, 목욕 등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뒤 나체 상태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등 저항하였고, 2021. 5. 21.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는 행위 이외 3회 유사강간미수, 4회 강제추행을 하였고 7회 폭행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데, 대법원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 계약 등에 따라 시설의 업무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 위 시설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대법원 2023도2358

키워드: #성폭력처벌특별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가중처벌

선 정 의 견

• 강송욱

이 판결은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 있어 대한 제재를 강화한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에 보다 중점을 둔 적극적인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디딤돌 판결에 해당한다.

특히 이 판결은 엄격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실질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소재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바리스타 교육, 복지관 카페 수업 보조·진행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인지기능의 저하, 사회성과 판단력, 적응능력의 저하로 장애진단을 받았고, 전체지능 44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당시 19세)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법정형이 매우 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종사자'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시설에서 사실상 종사하면서 장애인을 업무상 접촉하게 되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권한 유무 등과 무관하게 위 조항이 규정한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도 부합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3노50 판결).

향후 위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법문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시설은 장애인의 보호나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역시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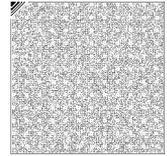
디딤돌 판결 4

농아인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체포 및 의사소통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

사실 관계

수원지방법원 2021노7010 사건은 농아인인 피고인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관들은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였으나, 농아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파출소에서 경찰은 필담으로 체포 이유와 권리를 설명한 후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며,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적법하게 체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는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필담을 통한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음주측정 결과를 위법한 증거로 간주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확인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폭력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였고, 수어통역 없이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를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지능지수와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할 때, 필담을 통한 고지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7010

키워드: #농아인 #적법한 체포 고지 #의사소통 절차 #폭력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절차적 정당성

선 정 의 견

• 김성태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경찰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권리 침해로 인정되었으며, 법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장애인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함으로써 부당한 법 집행에 저항할 권리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판결에서는 장애인의 이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 법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의사소통 방법을 준비해야 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경찰의 대책 마련과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디딤돌 판결 4

법적 근거 없이 보행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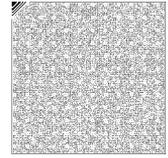
사실 관계

이 사건은 주장애는 지체(상지기능) 장애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부장애는 지체(하지기능) 장애 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원고가 종합 장애 정도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결과를 장애정도심사에서 통보받았으나, 피고인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하자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를 요구한 사건이다.

서울시와 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을 위해서는 보행상의 장애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장애정도 판정기준 고시에는 심한 보행상 장애와 심하지 않은 보행상 장애를 구분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법령상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처럼 고시 기준표상의 심한 장애를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해석한다면 보행상의 어려움 정도와 무관하게 행정 편의에 따라 장애인을 구분하여 특별교통수단 제공을 달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교통약자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교통약자법의 취지를 볼 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해당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서울특별시와 시설공단이 허가할 것과 피고의 차별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서울고법 2022나2052639

키워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보행상장애정도 #이동권침해손해인정

선 정 의 견

• 배용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에 대해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피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보행 상 장애가 있으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권리를 인정한 점은 서울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는 것이 선정 위원의 공통 의견이었다. 다만, 최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 등 현재 정책의 방향이 점진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지적해야 할 점이다.

또한 원고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거부하는 차별을 행하고 정당한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는데,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제19조의 이동이나 교통수단의 이용이 아닌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으로 판단하여 선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판결을 활용해 향후에도 제26조를 적용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디딤돌 판결로 보기에 충분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디딤돌 판결 5

정신적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할 때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임을 인정하고 동반자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판결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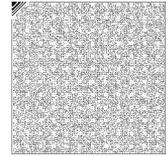
사실 관계

이 사건은 주장에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이고, 부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병변 장애 가진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서울시설공단의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2023년 4월 3일 경, 동반자 없이 단독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하였으나 이용을 거부당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도 동반자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신청한 민사 소송 사건이다.

법원은 채무자인 공단이 채권자가 보행상의 장애의 사유가 된 장애(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정도가 심한 보행장애인이 아니므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이 보행상 사유가 된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교통약자법 제16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할 때 채권자는 보행상의 장애인인면서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교통약자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가 아니라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로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지적장애인의 돌발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돌발행동은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지적장애인이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행동을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돌발행동을 할 우려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도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휠체어를 사용하기에 장애인 콜택시에 탑승하면서 휠체어를 고정하게 되므로 휠체어를 벗어나 운전원에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채무자인 공단이 제출한 자료의 사례들은 지적장애인이 아닌 자폐성 장애인의 사례이므로 채권자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대전·인천·광주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지적장애인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 등도 지적장애인에게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지 않는 사례를 고려하였다. 법원은 이상의 이유로 채무자인 공단의 채권자에 대한 탑승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소명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중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로서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판결하였다.



서울중앙 2023카합21154

키워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보행상장애 #보호자동반요구 #임시조치

선 정 의 견

• 배용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해석을 교통약자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여 교통약자법에서 요구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는 보행상의 이유가 되는 장애(본 채권자의 경우 뇌병변 장애)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이고, 그중에 보행 장애로 판정받으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권리를 인정한 점과, 원심에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의 교통 및 이동수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반해 본 판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가 아닌 제15조의 재화와 용역에서의 차별로 보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인 공단의 차별행위를 중지(탑승 허용)하라는 임시 조치를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법원의 구제 조치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어 디딤돌로 선정하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통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성년후견을 종료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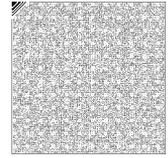
사실 관계

발달장애인인 사건 본인 및 보호자는 사건본인이 학교나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여겨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성년후견이 개시된 후 ○○데이케어센터에서 급식지원과 환경 미화, 노인케어 등을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수료한 다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국가시험)에도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피성년후견인은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성년후견을 종료하는 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에게는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발달장애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법원은 “현행 법령상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다수의 결격사유 조항들은 개별적인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령상 영업·자격 등의 관련 직무에서 피성년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들로 하여금 직업 및 자격취득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를 획일적이고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며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법원은 “위 성년후견개시 요건은 단지 의학적 관점에 따라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만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이 장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의사결정)의 범위와 친족 등의 도움을 받아 후견 없이도 사무를 처리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포함하여 법 제도적 관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립여건과 환경, 잔존능력의 활용 측면에서 후견적 개입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법정후견이 개시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성년후견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며 성년후견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보호자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와 그 유지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요건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것을 명시하였다.

법원은 제시한 요건에 맞춰 사건의 당사자인 장애인의 구체적인 사정 또한 고루 살펴 성년후견개시를 종료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22후기611 성년후견 종료 평석

키워드: #성년후견종료 #자기결정권

선정의견

• 조인영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 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를 '장애가 사라진 경우'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성년후견종료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성년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민법 규정,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배경 및 기본이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의사결정권리 및 지원체계 등을 두루 살피면서, 성년후견으로 인한 장애인의 권리 배제 및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통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성년후견개시 및 종료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해당 판결은 장애인의 성년후견사건에서 지표가 될 만한 판결에 해당하여 디딤돌 판결로 선정한다.

디딤돌 판결 7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비대면 거래 금지와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우체국의 내부규정이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 차별행위라고 판결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사례

사실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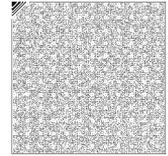
원고들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지적장애인으로, 원고가 예금 계좌에서 해당 인출일 이전부터 30일 합산한 금액(해당 인출금액을 합하여) 100만 원 이상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30일 합산 300만 원 이상 금전의 이체인출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예금통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체국은 내부지침으로 30일 합산 100만 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통장 및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 직접 거래를 해야 하고,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한 후 마찬가지로 은행창구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였다(이하 '예금거래 제한조치')

이에 원고들은 100만 원 이상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만으로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한 우체국의 조치는 한정후견심판을 통해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7조), 우정사업본부의 원고들에 대한 예금거래 제한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제한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거나 판단할 여지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과 산하 국가기관은 우선하여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가 있을뿐더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차별 시정예가 중된 책무를 부담하는 점(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차별행위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0다301308

키워드: #한정후건 #금융거래 제한 #예금 인출 후건인 동행 요구

선 정 의 견

• 강송욱

범죄약용 등 막연하고 불확실한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금융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온 금융기관들의 실태를 바로잡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옹호라는 후견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반영한 판결로써 선정위원들 모두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의적으로 법원의 한정후건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판단이며, 금융거래나 보험 가입 등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비장애인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누리는 것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후견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장애인들에게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만 가능한 현실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매우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 점은 아쉬운 측면이다. 또한 부당하게 금융거래를 제한한 위법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20만원으로 극히 소액인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자료 인정에 매우 인색한 듯한데, 이는 매우 자의적인 태도로서 잘못된 것이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차원에서도 시정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대한민국과 국가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차별 시정에 '가중된 책무를 부담'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매우 인상적이다. 장애를 이유로 금융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시중 금융기관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당국 등 국가기관이 행정지도, 감독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차별행위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해 본다.

디딤돌 판결 8

정신적 장애인의 진술 신빙성과 형사사건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한 주요 사례

사실관계

(1) 춘천지방법원 2023노15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2심에서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정신적 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했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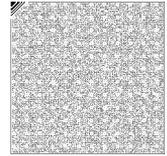
이 사건은 장애인 수영선수단의 감독과 코치들이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이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히, 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 판결로 볼 수 있다.

(3) 대구지방법원 2022노2699 사건

피해자인 지적장애 여성이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특정이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4)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4 사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부친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존속살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존속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형의 집행유예를 유예했다. 이 판결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여 양형을 결정하였고,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선정의견

• 김성태

이번 판례들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과 형사사건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한 중요한 사례들이다. 특히, 장애 인권적 관점에서 이 판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먼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인지적 능력이나 기억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판례들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사건에서는 지적 장애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더라도, 장애로 인한 한계를 인정하고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는 장애인의 진술이 단순히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신빙성 평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법원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포괄적이고 인권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2022노2699 사건에서는 지적 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사건을 재판한 사례이다. 이 판결은 지적 장애인의 증언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그들의 인지적 어려움을 고려한 법적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즉,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판단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춘천지방법원 2023노15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4 사건에서는 정신적 장애가 범죄의 고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춘천지방법원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로 인해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정신적 장애로 인한 인지적 어려움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선고이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고의성 판단의 차이를 인정한 이 판결은 법적 판단에서 장애 감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이들 판례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이는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사법 정의가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이 판례들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진술 신빙성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적장애와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직장 내 차별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망인 C는 E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로, 2013년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9년 5월 15일, 그라목슨을 음독한 후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9년 5월 18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 A와 B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2021년 4월 21일, 피고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년 6월 25일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년 12월 22일 기각결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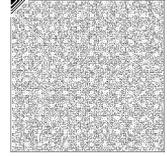
법원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망인이 사업장 내 차별, 동료와 불화, 불분명한 업무 분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였다.

원고의 주장 근거는 망인이 자해행위 후 중환자실에서 동생과의 대화에서 무시당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검찰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식자재 운반, 폐기저귀 처리, 요양원 청소, 박스 정리 등을 수행한 바 있다는 사실에 기초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자살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한 질병, 코로나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한다.

검토 결과, 법원의 해석 및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먼저, 기초 사실을 인정했다. 망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차별과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였다. 망인은 자살 직전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되었다고 보았다. 세 번째로, 직장 내 차별 및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았다. 망인은 직장 내 차별과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세가 악화되었으며, 이는 망인의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리를 적용한 결과 망인의 자살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서울행정지법_2022구합62741

키워드: #장애인 근로자 #직장 내 차별 #업무상 재해



선 정 의 견

• 변재원

법원이 망인의 지적장애와 차별을 적법하게 고려한 판결로 보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직장 내 차별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했다. 망인의 지적장애와 직장에서의 차별, 불화 등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나아가, 이 판결은 직장 내 차별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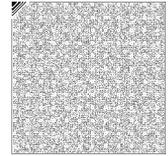
정신장애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언행이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적 언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실관계

피해자(여, 21세)는 정신장애 3급 및 조현병을 진단받은 지능지수 61-71, 사회연령 10세 2개월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오락실에서 혼자 게임을 하던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장애인임을 인지한 피고인이 음료수로 유인하여 모텔에서 성폭력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2주 동안 교제를 한 것이라고 하지만, 피해자에 대해 아는 것은 '나이가 24세이고 00동 무슨 아파트에 사는 것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간 이유가 '연애할 줄 알았고. 연애는 연락하면서 맛있는 것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 것'이며,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귀는 건 좋았는데 하는 건 싫었고.'라고 진술하였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것에 불과하여 간음행위 자체나 간음행위의 동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간음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위계적 언동을 하였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피고인의 언동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동기에 관해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졌음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반면 대법원에서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 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을 정서적 교류를 포함한 연애를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오인, 착각을 일으켰고, 성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언행이 비장애인 상대였다면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적 언동이라 평가하기 부족할 수 있으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성행위를 결심하기에 이르는 위계적 언동으로 작동하였으며,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언행은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적 언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_2020도15730

키워드: #장애인위계등간음 #피해자 중심주의 #진술의 신빙성

선 정 의 견

• 조한진희

성폭력 사건은 법원에서 비장애인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여타 행동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석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는 것이 여성계의 오랜 비판이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절대다수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문제화된 게 사실상 2000년 이후부터인데, 정신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이나 피해자 중심의 관점은 여전히 요원한 현실이다. 정신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사건 무죄 판결의 주된 이유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피해자의 항거불능이나 항거 곤란 부정, 위력 또는 폭행 협박의 부정,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대한 부정 등이 큰 요소로 작용해 왔다. 본 사건의 원심에서도 위계, 위력에 대한 해석을 좁게 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해석해 내지 못한 면모를 보인다. 반면 대법원 판결은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행위자의 언행을 판단하여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위계 위력을 정신장애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했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는 연애나 인간관계 대한 이해 안에서 해석하고자 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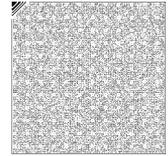
디딤돌 판결 11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정을 타당하게 해석한 근거를 제시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상대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

사실 관계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휠체어의 바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인의 안전에 “더욱”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기소의 주된 근거로 들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대상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전동휠체어 즉,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차마’에서 제외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차마’에서 제외한 것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없이 독립 보행이 힘든 장애인 등의 보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을 함에 있어 기계적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조작 의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다른 보행자와의 관계에서 상대가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넘어서 추가적인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피고인을 앞질러 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제동 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3고정84

키워드: #전동휠체어 #주의의무기준

선 정 의 견

• 윤여형

전동휠체어와 관련한 사고,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문제 되는 사례는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물론 보행자의 안전은 소중한 가치이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는 것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이를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과도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

기존의 전동휠체어 사고 사건에 대한 판결 몇 가지를 보면, ‘좌우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동휠체어가 보행 중인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8 선고 2016고단6000 판결),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3. 선고 2018고단1202 판결)는 등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에 관한 판시 내용들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와 유사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다만, 사건으로 위 사건들의 판결에 제시된 사실관계만을 고려하면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유 설시에도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다).

대상 판결은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상대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 판결은 이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상의 관련 규정을 타당하게 해석하여 근거로 제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정당한 이동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만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어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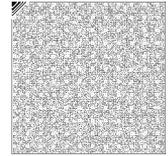
디딤돌 판결 12

장애를 넓은 범위에서 해석함으로써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해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사실관계

태백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8월 태백시 매립장에서 집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도중 왼쪽 엄지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좌상지에 통증과 이에 따른 근력 저하의 소견을 근거로 마취통증의학전문의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소견과 함께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태백시는 A씨의 장애등급 결정을 취소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장애등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법에서는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CRPS환자의 실질적 상태를 반영하여 중증 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 복지법에서 단순히 통증을 이유로 CRPS를 지체기능장애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근력기능감소 등을 겪고 있는 원고의 증상이 통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통증을 수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체기능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을 전제 한 뒤,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장애인복지법령상 지체기능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19두51451

키워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지체장애인정

선정의견

• 조한진희

최근 들어 질병과 장애의 경계 범주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전통적 장애 구분을 넘어 다양한 질병이 장애 범주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의료 등의 엄격한 기준 자체보다는 해당 손상이나 증세가 개인의 삶에 초래하는 불편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반영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복합 부위통증증후군(CRPS)이 2021년부터 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장애를 넓은 범위에서 해석함으로써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지체기능장애로 판단한 매우 긍정적 판례이다. 다만 통증 자체가 장애의 요소로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아쉽고, 통증 범위나 정도와 상관없이 경증으로만 등록되며 2년마다 재진단 받아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런 유의미한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현재까지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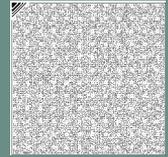


2024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판결은

총 4개 판결입니다.



걸림돌 판결

- ① 30여 년 간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행위를 '선행'과 '돌봄'으로 포장하여 주체적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②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하는 경우 운전석 대각선에만 앉아야 한다는 지침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③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사건에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판례에 따른 재량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한 사례
- ④ 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보조 제한 등에 대하여 현행 투표보조인 제도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법적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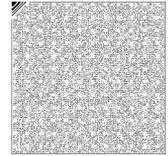
걸림돌 판결 1

30여 년 간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행위를 ‘선행’과 ‘돌봄’으로 포장하여 주체적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실 관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사찰에 생활하면서, 2000. 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불, 기도 등을 담당하는 노전스님역할을 하면서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의 일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4. 11.부터 2017. 12. 31.까지 B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보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일 04:00경부터 22:00경까지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하게 하고도 합계 129,295,2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착취를 하였다. 피고인은 노전스님으로 대우하며 울력을 수행한 것이지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사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노동력 착취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노동력착취가 아닌 울력이라고 주장하며, 승려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장애인은 승려의 자격이 없음)은 종단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노전스님으로 대우했으므로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키우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위탁했음에도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피해자를 노전스님으로 대우하며 병원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차별 피해나 금전적 착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총 12회의 폭행 혐의는 2019. 11. 30. 경 벌금형이 확정됨으로써 인정되었음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장애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부적절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도2982

키워드: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장애인 학대 #종교시설 내 학대

선 정 의 견

• 조인영

이 판결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노동권, 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권리 등을 모두 무시한 판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의미를 형해화하였다. 사찰 내 비장애인 승려에게도 보수를 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님에도 법원은 문언을 넘어선 해석을 함으로써 장애인을 착취하는 행위 자체를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사찰이라는 종교적인 공간의 폐쇄성, 사찰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피해자 상황, 피해자의 지적장애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찰이라는 종교적인 공간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제기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하루 16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추위, 폭언, 폭행이 고동스러웠으며 스님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및 주변 사람들의 의사를 중심으로만 판단하였다. 법원은 장애인에게 가해진 상습적인 폭력을 경미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사법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법원은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가해자의 행위를 '선행'과 '돌봄'으로 포장하여 주체적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판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다른 판결의 해석과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된다. 법원은 다양한 방식의 차별과 착취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의 삶과 그 실질적인 어려움을 들여다보아야 할 법원의 역할을 망각하였다. 다른 장애인차별금지법 사건에서 인용되어서는 안 될 대법원판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걸림돌 판결로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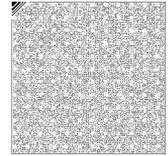
걸림돌 판결 2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하는 경우 운전석 대각선에만 앉아야 한다는 지침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사실 관계

원고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수탁법인)이고,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은 발달장애인을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하는 '탑승 제한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였다. 이에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진정 기각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사미진, 비례성 결여를 이유로 취소 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에게 위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권고에 대해 불복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하도록 한 권고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은 처분성이 있고, 원고가 행정기관이라도 원고적격이 있다는 것이다. 본안과 관련한 주된 논거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서 정한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없고,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권고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후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의 차별은 정당한 차별이라고 실시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1) 탑승 자체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도전적 행동의 위험성이 더 큰 점, 3) 뒷좌석이 아닌 보조석에 탑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밝히기 어려운 점, 4) 도전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한 분류 자체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905

키워드: #이동및교통수단 #차별수단 한정 #원고적격 #정당한 차별

선 정 의 견

• 임한결

이 판결은 본안 전 항변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한 오류를 저질렀다. 행정소송은 그 연원이 국민이 국가로부터 부당·위법한 처분을 받을 때 제기하는 것이다. 행정기관 간의 다툼, 특히 행정기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목적을 형해화한 판단이다. 차별행위로 시정할 것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얼마든지 행정소송으로 수년을 버틸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번 디딤돌 판결에서 드러났듯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동 및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행정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얼마든지 특별교통수단에서의 장애인 차별도 심사하고 권고 내렸다. 그런데 해당 판결은 마치 법기술자처럼 하나의 정의 조항만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법적으로 장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발달장애인이 민간회사의 택시를 불러 탑승한다고 가정할 때 택시회사가 발달장애인은 특정좌석에만 앉아야 한다고 제한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선정위원 중 1인은 이 사건이 마치 한국판 몽고메리 버스 사건이라고 하였다. 흑인이 앞줄에 앉으면 버스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굳이 가정적 판단까지 앞세워 차별 정당화 논리를 마구 펼친 이 판결은 선정위원 만장일치로 걸림돌 판결이 되었다.

걸림돌 판결 3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사건에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판례에 따른 재량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한 사례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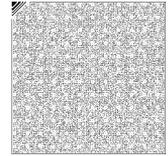
이 판결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인 원고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내용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가해학생 A는 침대에서 이불을 덮은 채로 꺼안고 누워 있는 남녀의 그림 중 남성의 얼굴에 원고와 같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 속한 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고, 여성의 얼굴을 마스크를 쓴 원고의 얼굴로 합성하여 남녀가 덮고 있는 이불 위에 여성의 얼굴을 첨부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만들어 가해학생 B에게 발송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A와 B를 포함한 여러 명의 학생들이 나체사진 등에 피해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붙여 합성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사이버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는 출석정지 10일, 피해학생들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 8시간, 특별교육이수 7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은 위 의결에 따라 가해학생 A, B에게 이 사건 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치가 1)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에 따른 세부기준 고시(이하 '세부기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 항목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인 원고가 장애학생임에도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며, 2) 세부기준 고시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부가적 판단요소로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가해학생 A, B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내리면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학교폭력행위의 위법성, 지속기간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치가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내용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 심의위원회가 세부기준 고시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기본판단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과반수 이상의 합의 의결에 따라 조치 의결을 하였으므로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의결 방식을 위반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나 상담 등은 필요적 절차가 아닌 심의위원회가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2)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사진이 장애 비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였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재량기준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장애인식교육은 특별교육의 내용 중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교육장은 특별교육이수처분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 사건 조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용상 하자도 부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588

키워드: #재량권일탈남용 #학교폭력 #사이버성폭력

선 정 의 견

• 강송욱

이 판결이 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이유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재량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장애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소극적인 판단을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에 비하여 학교폭력에 취약하므로,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가해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

위와 같은 관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학교폭력대책심사위원회의 조치 의결과 같은 재량행위라고 하여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를 심사하는 경우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원 스스로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위 판결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경우 이를 가중사유로 삼을지 여부,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지 여부 등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재량행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맡겨 버리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 의결이 학교폭력 피해자인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 위법성 판단의 실질적인 내용을 누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일례로 심의위원회가 장애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조치 의결을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은 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장애 전문가의 의견 청취 없이도 장애학생인 피해자의 보호에 적합한 조치가 의결되었는지 여부 등은 당연히 사법심사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내어놓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도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장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폭력 피해나 이에 대한 사후 대응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절차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입법 개선 사항으로서 장애 전문가의 의견청취나 이를 가중사유로 삼을지 여부, 별도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을 재량행위가 아닌 원칙적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걸림돌 판결 4

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보조 제한 등에 대하여 현행 투표보조인 제도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법적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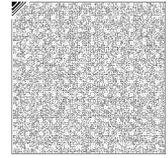
원고들은 당시 2급 지적장애 지닌 A, 중증 지적 뇌병변장애를 지닌 B, 2급 지적장애를 지닌 C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원고들은 2022년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장애에 따른 투표 편의 제공을 보조받기 위해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 투표사무원들이 가족이 아닌 사회복지사들의 투표보조를 거부하고, 원고들 각자 단독으로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종용했다.

구체적으로, 원고 A는 사회복지사 D와 함께 투표소에 방문하였으나, 투표사무원은 원고 A에게 단독으로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원고 A는 혼자 투표를 마치기는 했으나, 이후 “다음 선거에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원고 B는 시력이 좋지 않아 투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표사무원 J가 다른 선거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안내되었다. 원고 B는 기표소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결국 투표사무원 J가 대신 기표를 도와주었다.

원고 C는 사회복지사 F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투표사무원 J가 이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했다. 원고 C는 기표소에서 혼자 투표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이게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투표사무원이 다시 들어와 투표를 도와주었다.

이에 원고들은 투표보조인을 통해 투표할 권리를 요구하며, 피고의 투표보조인 제도 운영이 헌법상 권리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지적 및 뇌병변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서 투표보조가 필요하다는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헌법상 선거권과 평등권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나, 현행 투표보조인 제도의 운영방식이 원고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현행 법령에 따른 투표보조인 제도가 이미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투표보조인 제도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원고들이 주장한 추가적인 투표보조인 지정 요구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부산지법_2022가합42897

키워드: #장애인 선거권 #투표보조인제도 #차별행위 청구대상

선 정 의 견

• 변재원

이 판결을 걸림돌로 선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법원은 원고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투표보조인 제도가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만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투표사무원 J 아닌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하는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았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령과 제도가 이미 적절한 투표 보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기반하였으나, 이는 행정 절차의 입장만을 검토한 소극적인 해석으로서 원고들의 실질적인 선거권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향후 장애인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투표보조인 제도 운영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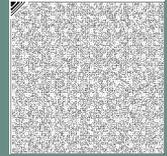


2024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주목할 판결로 선정된 판결은

총 2개 판결입니다.



주목할 판결

- ①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대출계약의 무효, 대출금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자문서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 ②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표준휠체어에 관해서만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에 대하여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주목할 판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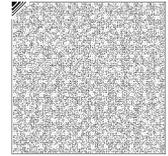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대출계약의 무효, 대출금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자문서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사실 관계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하던 C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원고가 지적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신분증, 면허증,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 이를 전달 받았다.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 신규 유심칩을 개통하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금융기관에 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 금융기관은 대출을 승인하고 5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 C는 이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이 행위에 대하여 C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계약은 효력이 없고, 대출금채무가 부존재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마쳤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와의 대출약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출채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피고에게 위 법규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그 판단기준으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금융기관이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실명인증을 하였고, 원고의 실명 정보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실명인증 절차를 거쳤고, 대출신청서 및 대출약정서에 원고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받고, 원고의 신분증 사진을 제출받고,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그 송금코드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조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였다.



2021가단5118599

키워드: #비대면금융전자거래 #명의도용

선 정 의 견

• 윤여형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는 사회적 편익, 유용성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거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함은 부인하기 어렵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이익은 이러한 이익과 상충되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판결문에 제시된 것처럼, 관련 법률도 나름 양자의 이익을 조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규정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판결의 결론이나 근거 자체에 큰 무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고, 관련 규제가 그러한 것들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는 분명 의문이다. 가령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라 진행한, 외견상 촘촘해 보이는 여러 확인 수단들은, 단지 가해자 C가 원고의 지적장애타입을 이용하여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것만으로 모두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대상판결 또한 원고가 가진 장애의 특성을 더 세심히 고려하여 판단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다소간의 아쉬움은 있다.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세심한 보완,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전자금융거래의 편익성과 거래 신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기 등 범행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특히 그러한 불법 행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특성의 고려, 적절한 보호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목할 판결로 선정하였다. 물론 그러한 제도의 보완과 발전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차별(거래의 제한이나 추가적인 부담의 부과 등)이 생겨나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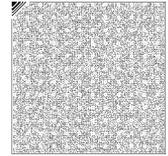
주목할 판결 2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표준휠체어에 관해서만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에 대하여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사실 관계

청구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거하는 자녀이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고, 청구인은 그러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장애인인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이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서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둘째,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함에도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셋째, 특별교통수단 제도는 수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 부담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될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에 어떤 휠체어를 기준으로 고정설비를 얼마나 장착할 것인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주체가 자신의 재정 상황, 관내 장애인의 수, 장애유형별 비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수요 및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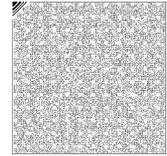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4 전원재판부 결정

키워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고정설비 #평등권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선정의견

• 임한결

입법부작위에 대한 흔치 않은 위헌 결정이라 디딤돌 판결로 선정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선정위원 전원은 판결의 결과에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이동권'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점을 아쉽게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저상버스도입 의무불이행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 의무가 도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2헌마52). 그로부터 분명 한 발 나아간 판단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장애인들 간의 평등권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이동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시혜적 급부'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판결 내용 중에도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시각이 드러났다. 이동은 개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고유기능이자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이동권이 헌법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도 판단한 바가 없다. 향후 비슷한 사안과 헌법 개정 논의 등에서 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24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행일 2024. 9. 2.

집필 2024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

발행처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303호

전화 02-2675-8153 **팩스** 02-2675-8675

후원 보건복지부,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대한변호사협회

제작 EM실천 02-875-9744

ISBN 979-11-92957-09-8